

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

의안 번호	1739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: 2021. 05. 03.

제 출 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우정혁신도시 준공(2014. 6. 30.) 당시 약사동 442-6번지는 공공청사(주민센터)건설 예정 부지였으나, 약사동행정복지센터가 2013. 5. 7. 건설비 41억을 투자하여 확대 추진 및 건립된 상태였음.
- 나. 해당 용도가 사라져 공공업무시설 추가(용도변경)하여 다른 시설을 검토했으나, 구체적 활용계획의 부재와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취득하지 못함.
- 다. 그러나 혁신도시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, 다양한 행정 수요 반영 및 국가공모사업의 지속적 증가 등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당 부지의 활용 가치가 충분하므로,
- 라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혁신도시 공공청사(주민센터) 부지 취득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공유재산심의회 (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6조): 2021. 4. 26.
- 나. 계획의 총괄
 - 취득대상 재산
 - 토 지
 - 수 량: 1필지
 - 면 적: 1,065.6㎡
- 다. 취득대상 재산현황

○ 토 지

(단위: m², 천원)

재 산 의 표 시				공시가액	매 입 재산가액	소유자	비 고
소재지	지목	지적	편입 면적				
약사동 442-6	대	1,065.6	1,065.6	2,205,792	1,172,000	한국토지 주택공사	향후 중구 필요 시설 건립을 위해 취득

3. 제출 부서 의견

매입예정 부지의 면적이나 위치 등 입지조건이 뛰어나고, 공공용지 및 도시개발 예정지 등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활용 가치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,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공유 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근거 법규

- 가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
- 나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

5. 참고 사항

- 가.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1부
- 나.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취득대상 재산목록 1부
- 다.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

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취득대상 재산목록

회계명: 일반회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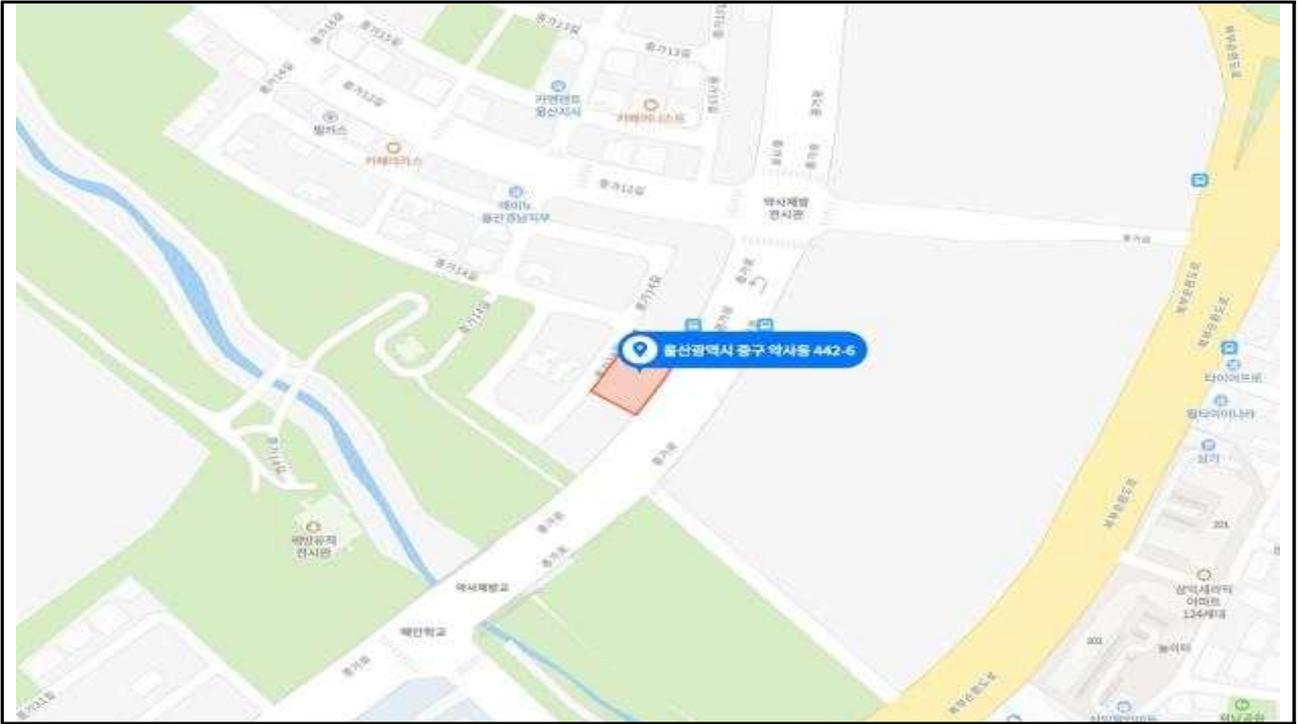
◎ 토지

(단위: 천원, m²)

연 번	재 산 의 표 시				공시가격	매입가격 (예정가격)	소유자	취득사유	비고
	소재지	지목	지 적	취득면적					
1	약사동 442-6	대	1065.6	1065.6	2,205,792	1,172,000	한국토지 주택공사	장래 행정 목적(필요 시설 건립)	

위치도 및 현장사진

□ 위치도



□ 현장 사진

